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4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실내·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.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씨름의 진흥과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,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씨름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씨름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	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	②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
	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
	관한 사항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